

13:30~14:30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F, 대회의실

제 6 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박 석 재

(우석대학교)

목 차

I . 서론	57
II . 개정 배경 및 경위	58
III . 구조상의 변화	61
IV . 내용상의 변화	72
V . UCP 600의 문제점	76
VI . 결론	78

제1장 서론

신용장통일규칙(UCP)은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에 관한 가장 성공한 사적 규칙이다. 동 규칙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NCOTERMS와 더불어 실무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여 왔지만, 1993년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이 개정된 이후 13년이 경과한 현재 비로소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최종 초안이 작성되고, 2006년 10월 25일 91대 0의 만장일치의 표결에 의하여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UCP 600은 2007년 7월 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¹⁾

그간 무역업계의 학자, 실무가, 은행업계를 비롯한 많은 관계 당사자들의 주목을 받아 온 UCP 600은 현행의 UCP 500과 비교해 볼 때 구조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UCP 500이 49개 조항이었던 것을 UCP 600에서는 39개 조항으로 10개 조항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서류심사기간을 제7 은행영업일에서 제5은행영업일로 단축하고,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제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CP 600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UCP 600의 등장 배경 및 경위를 먼저 고찰한 후, UCP 600의 변화를 구조상의 변화와 내용상의 변화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UCP 600의 문제점으로서 보험 관행과의 모순, 은행업계 위주의 규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UCP 600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향후 이에 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방법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의 웹사이트 자료 및 공식 저널인 DCINSIGHT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자료 획득의 어려움과 최근 UCP 600의 최종 초안이 승인을 받고 아직 공표 전이라는 시기상의 한계 때문에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에서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고자 한다.

1) 新堀 聰, “信用狀と詐欺”, “貿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第54券 第8號, 2006. 8, p.24.

제 2 장 개정 배경 및 경위

1. 개정 배경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이국간 거래시 신용장에 관한 법률의 상충 문제를 극복하고 신용장 분야에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하여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규칙이다.²⁾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에 최초로 공표된 이후 그간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개정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컨테이너화와 NVOCC의 출현을 포함한 운송업에서의 변화를 실무 관행에 적합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SWIFT의 시작 및 일반적인 컴퓨터화와 더불어 기술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³⁾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인 UCP 500이 1994년에 시행된 이후 운송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이 UCP 600 개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⁴⁾

2003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는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은행위원회)에게 현행의 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500의 개정에 착수하도록 수권하였다. 다른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목표는 은행업, 운송업 및 보험업에서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부가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적용과 해석을 이끌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제거하기 위하여 UCP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및 스타일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한 세계적인 조사⁵⁾에 의하면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들 중 대략 70%가 첫 번째 제시 시 불일치 때문에 거절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명백하게 지급 수단으로서 간주되고 있는 신용장에 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현상

2) Anonymous, "Banking commission approves revi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http://www.iccwbo.org/iccjcd/index.html>, Paris, 2006. 10. 25.

3) Laurence A.J. Bacon, "Who speaks for the exporter?",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6.

4) Anonymous, "Revised ICC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make progress", <http://www.iccwbo.org/icceide/index.html>, 2005. 10. 26.

5) R. J. Mann, "Ronald J. Mann wonders why, in view of high discrepancy rates, business continues to use letters of credit",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7, No.1, Winter 2001, p.3.

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제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신용장의 시장 점유율의 유지 또는 중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⁶⁾

요컨대 운송업, 보험업, 은행업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수용하고, 애매한 표현의 제거를 통한 불일치 견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정 경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2002년 가을 현행의 UCP 500 개정의 기본방침,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별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후 특별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의 지적이 행해졌고, 2003년 5월 은행위원회의 승인으로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⁷⁾

이를 위해 UCP 600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작성그룹(Drafting Group)이 10명의 회원으로 창설되었으며,⁸⁾ 자문그룹(Consulting Group)이 26개국 41명의 회원으로 창설되었다.⁹⁾ 초안작성그룹은 UCP 500하에서 은행위원회가 발행한 공식적인 의견서(Opinions)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재검토과정을 시작하였

6) ICC, The final draft of UCP 600, 2006. 11의 Introduction 참조.

7) 飯田勝人, “動き出した信用状統一規則の改訂作業と改訂の方向性”, “金融法務事情”, No.1693, 2003. 12. 15, p.4.

8) 초안 작성 그룹은 다음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Nicole Keller - 독일 프랑크푸르트 Dresdner Bank AG의 Service International Products의 부의장;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Laurence Kooy - 프랑스 파리 BNP Paribas의 법률 고문;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Katja Lehr - 벨기에 La Hulpe SWIFT의 Trade Services Standards의 Business Manager이며, 그 다음에 미국 뉴저지 국제금융서비스협회(IFSA)의 부의장, 회원대표;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Ole Malmqvist - 덴마크 코펜하겐 Danske Bank의 부의장;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Paul Miserez - 벨기에 La Hulpe SWIFT의 Trade Finance Standards 장;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René Mueller - 스위스 Zurich Credit Suisse의 이사;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Chee Seng Soh - 싱가포르 은행연합회 컨설턴트;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위원; Dan Taylor - 미국 뉴저지 국제금융서비스협회(IFSA) 회장 겸 최고경영자;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부의장; Alexander Zelenov - 러시아 모스크바 Vnesheconombank의 이사;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부의장; Ron Katz -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 ICC 은행기술 및 실무위원회 Policy Manager

9) 런던의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Europe Ltd.의 부총지배인(Deputy General Manager) John Turnbull과 이탈리아 로마의 은행가협회의 고문인 Carlo Di Ninni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다. 뿐만 아니라 1994년 9월 은행위원회가 간행한 네 가지의 Position Papers,¹⁰⁾ 은행위원회가 간행한 두 가지의 Decisions(유로화의 도입 및 UCP 500 제20조(b)항하에서 무엇이 원본서류를 구성하는가의 결정에 관한)¹¹⁾ 및 DOCDEX 사건들에서 간행된 결정(decisions)의 내용¹²⁾이 고려되었다.¹³⁾ 그 동안 초안작성그룹은 15번의 회합을 가졌으며, 5,000개 이상의 코멘트가 수령 및 재검토되었다.

2006년 6월 중순까지 UCP 600의 초안들은 각 국내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15차례 발송되었다.¹⁴⁾ 이들 중 일부는 UCP 600의 단지 소수 조항만을 포함하는 일부 초안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초안은 광범위한 코멘트가 수령된 완전한 초안이었다. 각 국내위원회의 검토 후 ICC 은행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러한 코멘트를 검토하고 새로운 UCP 600 초안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최종 초안은 2006년 9월에 각 국내위원회에게 발송되었으며, 동 초안은 2006년 10월 24일, 25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의 은행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¹⁵⁾ 91대 0의 만장일치의 표결에 의하여 ICC 은행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 화환신용장에 관한 ICC의 개정된 규칙인 UCP 600을 승인하였다.¹⁶⁾

지난 3년 과정 동안 ICC 각 국내위원회는 초안작성그룹이 제출한 대안적인 원문에 관한 그들의 선호를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및 원문에서 개개의 항목들에 관한 각 국내위원회로부터의 상당한 인풋(input)이 UCP 600의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다. 초안작성

10) 1994년 9월에 간행된 네 가지의 Position Papers는 UCP 500하에서 그들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은 UCP 600하에서 적용 불가능할 것이다.

11) 원본서류의 결정을 다루는 Decision의 본질이 UCP 600의 원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 UCP 600 제17조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참조.

12) DOCDEX 사건들의 결론은 변함없이 현재의 ICC 은행위원회 의견서(Opinions)에 입각하였으며, 따라서 본 규칙에서 언급하는 것을 필요로 한 어떤 특수한 문제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13) ICC, *supra* note 6.

14) 각 국내위원회가 “Negotiation” – in or out, “On its face”, “Reasonable time”, “Parties or Banks”, “Discounting of deferred payment undertakings”, “Whether to split article 28 of UCP 500”, “Relevance of article 30 UCP 500”, “Requirement for new articles”, “Non-documentary conditions”에 관한 선호된 판, UCP 600에서 보여진 “inconsistency” or “non-conflicting”에 관한 재검토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투표하도록 요청받았다.(ICC, UCP 600 Conference, Paris, October 26, 2006.)

15) Anonymous, “UCP update : Working on the final draft”,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2.

16) Anonymous, *supra* note 2,

그룹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현재의 관행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관행의 미래의 발전을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UCP의 이번 개정은 초안작성그룹, 자문그룹, 은행위원회의 회원들 및 ICC 각 국내위원회 사이에서 3년 6개월간에 걸친 광범위한 분석, 재검토, 토론 및 타협의 산물이다.¹⁷⁾

금번 개정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었다. 단지 소수 항목들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인 개정(technical revision)으로서 시작한 것이 광범위한 줄 간(line-by-line) 재검토로 바뀌었다. 이것은 개정은 일단 시작되면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¹⁸⁾

제 3 장 구조상의 변화

1. UCP 600에서 폐지된 조항들

다음의 조항들은 UCP 500에서 존재하였으나 신 규칙인 UCP 600에서는 제외되었다. 이하에서는 제외된 조항의 내용들 및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신용장의 개설/변경 지시(UCP 500 제5조)

- a. 신용장 개설의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이에 대한 변경의 지시 및 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은 다음과 같은 여하한 시도도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 i. 신용장 또는 이에 대한 모든 변경에 있어서 과도한 명세를 포함하려는 것;
 - ii.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에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신용장(유사 신용장)을 개설, 통지 또는 확인하도록 지시하려는 것.
- b. 신용장 개설의 모든 지시와 신용장 그 자체,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의 모든 지시와 변경 그 자체는 이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17) ICC, *supra* note 6.

18) Anonymous, *supra* note 15.

또는 매입을 행할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 지시에 관하여 은행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UCP 500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부터 동 조항은 은행원들의 업무 지침으로서 활용되어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는 이러한 지침이 은행내에서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 규정을 UCP 600에 추가하는 것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이 UCP 600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 취소가능한(UCP 500 제6조의 내용 중 일부)

a. 신용장은

- i . 취소가능한 것이거나, 또는
- ii . 취소불능한 것일 수 있다.

b. 따라서 신용장은 그것이 취소가능한 것인지 또는 취소불능한 것인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c.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취소불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⁹⁾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인 UCP 500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 실무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전혀 의의가 없기 때문에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동 조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UCP 600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신용장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최종지급(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 동 조항에서의 표현을 제거하고 UCP 600 제3조 해석 조항에서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를 추가하였다.

(3) 취소(UCP 500 제8조)

- a.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의자에게 사전의 통고없이 언제라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b. 그러나, 개설은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i. 취소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일람출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된 타 은행에게는, 그러한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행한 모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 ii. 취소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연지급을 행하도록 수권된 타 은행에게는, 그러한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UCP 500 제6조의 폐지 이유와 동일하다. 즉,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인 UCP 500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 실무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전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동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⁰⁾ 또한 UCP 600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신용장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최종지급(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한 규정은 삭제가 불가피하였다.

(4)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UCP 500 제12조)

신용장을 통지, 확인 또는 변경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단순한 정보로 수의자에게 예비적 통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적 통고에는 통지은행이 아무런 책임없이 단순한 정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명백히

20) 飯田勝人, 전계논문, p.4.

표시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가 취한 행위를 반드시 통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자체 없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료한 지시가 접수되고 이에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변경되어진다.

동 규정은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에 관하여 은행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UCP 500이 시행된 이후부터 동 조항은 개설은행, 통지은행의 업무 지침으로서 활용되어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는 이러한 지침이 은행 내에서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 규정을 UCP 600에 추가하는 것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규정이 UCP 600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규정의 일부 내용은 UCP 600 제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UCP 600에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5) 다른 서류들(UCP 500 제38조)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에 있어서 신용장이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서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이 별도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운송서류상에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부기된 것으로 표시된 중량타인 또는 중량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물품의 중량인증 또는 중량증명이 요구될 때,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이나 해상운송장 상에 직접 운송품의 중량이 틀림없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중량증명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중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또한 해상운송이 아닌 운송의 경우에도 신용장이 물품의 중량증명 또는 중량인증을 요구할 때 별도의 중량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화물의 중량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량증명으로 수리하여야 한다.²¹⁾ 따라서 동 규정은 실무상 확립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UCP 600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UCP 600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1)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7, p.571.

(6) 기타

UCP 500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제6조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제10조 신용장의 제 유형, 제20조 서류 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 서류발행인 또는 내용의 불확정, 제22조 서류 발행일과 신용장 개설일, 제30조 운송주선인 발행 운송서류, 제31조 갑판적/부지조항/수탁인명,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제35조 보험담보의 형태, 제36조 전위험보험의 담보, 제46조 선적일에 관한 일반표현 및 제47조 선적기간에 관한 용어의 내용이 UCP 600 원문 내에 포함 또는 통합되어 있다.²²⁾

2. UCP 600에서 신설된 조항들

(1) 정의(UCP 600 제2조)

이) 규칙의 목적 상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은행영업일(Banking day)은 본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서류 제시를 의미한다.

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최종 지급(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최종 지급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22) ICC, *supra* note 14.

최종지급(Honour)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 a. 신용장이 일람출금을 약정하였다면 일람출금으로 지급한다.
- b. 신용장이 연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연지급에 대한 확약을 부담하고 만기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다.
- c. 만일 신용장이 인수를 약정하였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의뢰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매입(Negotiation)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이 예정된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장에서 수권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제시자(Presenter)는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동 조항은 UCP 600에 새로이 도입되었다.²³⁾ UCP 600의 초안작성그룹은 가급적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의 사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은행들이 맡은 역할의 정의 및 특수한 용어와 사건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 UCP 600은 원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²⁴⁾ 따라서 동 조항은 UCP 500의 여러 조항들에서 분산, 반복하여 언급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UCP 500의 49개 조항을 UCP 600의 39개 조항으로 줄이고, 간결한 표현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3) 이 간행물이 왜 어떤 조항이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또는 본 규칙 속으로 삽입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UCP 600 조항들의 이론적 근거 및 해석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정보는 초안작성 그룹의 견해를 나타내는 ICC 간행물 번호 601번인 본 규칙에 관한 주석(Commentary)에서 발견될 것이다.

24) ICC, *supra* note 6.

이 중 주목할 점은 최종지급(honour)이라는 용어를 UCP 600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람출금 신용장의 경우 일람출금,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협약 이후 만기일에 지급, 인수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2) 해석(UCP 600 제3조)

이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단수의 단어는 복수의 단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단어는 단수의 단어를 포함한다.

신용장은 다른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다.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 서명, 스템프, 상징 또는 그 외 기계식 또는 전자식 확인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공증, 사증, 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템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된다.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립적인(independent)”, “공적인(official)”, “능력있는(competent)”, 또는 “현지의(local)”라는 용어들은 수의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신속하게(prompt)”, “즉시(immediately)” 또는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는 단어들은 서류상에서 요구되지 않았다면 무시된다.

“그 시경(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떤 일이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명시된 일자 혹은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25) Uniform Commercial Code(U.C.C.) Article §5-102(8)에 규정한 “honor”에 대한 정의와 거의 같다.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6.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 half)”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모든 날짜가 포함된다.

어느 달의 “초(beginning)”, “중(middle)”, “말(end)”이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모든 날짜가 포함된다.

동 조항은 UCP 600 제2조와 함께 새로이 도입되었다. 도입 배경은 UCP 600 제2조에서의 상황과 유사하다. 즉, 동 조항은 신용장에서 나타나는 애매한 또는 불명확한 표현으로부터 모호함을 제거하고, UCP 또는 신용장의 다른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문마다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을 동 조항에 집중하고 반복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대부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UCP 500의 여러 조항들에서 분산, 반복하여 언급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UCP 500의 49개 조항을 UCP 600의 39개 조항으로 줄이고 간결한 표현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²⁶⁾

상술하면 용어의 단수 및 복수에 대한 해석이나 은행에 대한 해석 기준은 UCP 600에 신설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UCP 500의 E장 잡칙(Miscellaneous Provision) 관련 규정의 제46조 선적일자에 관한 일반적 표현 및 제47조 선적기간에 관한 일자용어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동 조항에 일괄적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²⁷⁾

(3)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UCP 600 제9조)

- 신용장 및 이에 대한 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최종지급이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이에 대하여 변경을 통지한다.

26) ICC, *supra* note 6.

27) 강원진, 전계논문, p.8.

- b.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변경에 대한 외관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
- c.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그 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의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그 변경에 대한 외관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
-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은 그 신용장의 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 e. 은행이 신용장 혹은 그 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 f. 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신용장, 그 변경 또는 통지의 외관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시를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하기로 한 경우 그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의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그 변경 또는 통지가 외관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 조항은 UCP 500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신용장 외에 조건변경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 조항을 UCP 500의 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확인 없이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점(a항).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함에 있어서 다른 은행, 즉 제2 통지은행(second advising bank)²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2 통지은행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제2 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같이 외관상의 진정성 점검의무, 불확신 사항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한

28) 이와 같은 제2 통지은행은 현재 신용장 통지 관행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에서 새로 반영된 것이다.

다는 것(c항) 등이 주요한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²⁹⁾

(4) 지정(UCP 600 제12조)

- a.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최종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최종지급 또는 매입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은행에 대하여 최종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 b.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은행이 먼저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된 환어음을 매입(purchase)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심사 후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그 지정은행에게 최종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최종지급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동 조항은 UCP 500 제10조 c항 신용장의 제유형 부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지정은행의 면책 및 개설은행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은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개정 내용이다.

(5) 일치하는 제시(UCP 600 제15조)

- 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락(honour)하여야 한다.
- b.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락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 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수락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UCP 500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부분을 요약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다. 특히 은행의 의무 부분에서 최종지급(honou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29) 강원진, 전계논문, pp.9-10.

(6) 원본서류 및 사본(UCP 600 제17조)

- a.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 b.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 c. 서류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 i.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 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 ii.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신 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 iii.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 d. 만일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 e. 만일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UCP 500 제20조 b항과 c항에서 서류의 원본과 서명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류에 원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또한 모든 서류에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CP 600에서는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사항³⁰⁾을 반영하여 동 조항을 신설하였다.³¹⁾

UCP 600에서는 서류가 한 통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을 신설하고, 서류 작성자가 자신의 미리 인쇄된 원본 용지 위에 기재된 것도 원본으로 간주된다는 점 및 신용장에서 서류의 사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

30)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Banking Commission Decisions, 1999. 7. 2 참조.

31) 김종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34.

본을 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UCP 500 및 ISBP에서의 원본, 사본 서류의 제시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³²⁾

제 4 장 내용상의 변화

1. 서류심사기간의 단축

UCP 500에서는 서류심사기간을 “서류를 수령한 다음 날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였지만,³³⁾ UCP 600 제14조 b항에서는 “지명에 따라 행동하는 지명은행, 확인은행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은행영업일이 각각 주어진다.³⁴⁾ 이 기간은 유효기간 내의 제시일자나 최종 제시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또는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⁵⁾

동 조항의 개정 배경은 UCP 500에서의 “reasonable time”을 제7은행영업일이라 해석하여 불필요하게 서류심사과정을 지체함으로써 신용장의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reasonable time”이란 자동적으로 제7은행영업일을 의미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제7일은 “최대기간”이며,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1일과 제7일 사이의 어느 기간이 reasonable이라고 고려될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몇몇 법정의 사건들을

32) 강원진, 전개논문, p.15.

33) UCP 500 제13조 b항. “...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34) UCP 600 제14조 b항. “... shall each have a maximum period of five banking days...”.

35) UCP 600 제14조 b항.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취하였다.³⁶⁾ 국제상업회의소 37개 국내위원회 중 36개국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용어를 UCP 600의 본문에서 제거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최대 기간으로서 5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UCP 600에 반영되어 있다.³⁷⁾

UCP 600에서 서류의 심사를 위한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의 제거 및 제5은행영업일에 의한 대체는 서류 심사 과정을 빠르게 할 것이며, 신용장을 시장에서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³⁸⁾

2.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 허용

현재까지 인수 및 연지급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장들 간에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영국에서의 유명한 Banco Santander SA v. Banque Paribas 사건³⁹⁾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데, 동 사건에서 서류들이 적절하다고 발견되었지만 연지급 신용장의 만료일 이전에 사기가 발견되었다. 동 사건에서 법정은 만일 확인은행이 자기 자신의 연지급 확약을 할인한다면 동행은 자기 자신의 위험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며, 만일 사기가 만료일 이전에 입증된다면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한국,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은행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동 국가들은 연지급 신용장을 기한부 환어음 대신 연지급 확약서가 사용되는 유사한 유형의 신용장으로 간주하여 연지급 신용장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지명된 은행이 자행 자신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을 선지급 또는 매입하였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명확한 만료일에의 상환 약속을 확립함으로써 the Banco Santander 문제를

36) Pradeep Taneja, “UCP 600 :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NSIGHT*, Vol.12, No.4, 2006. 10/12, p.3.

37) ICC, The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 2005. 11의 comments to draft articles 참조.

38) Pradeep Taneja, op. cit., p.4.

39) 동 사건의 상세에 관해서는 K.T. Fung, *Leading Court Cases on Letters of Credit*, ICC Publication No.658, 2004, pp.38-44 참조.

40) 연지급 신용장의 개념 및 매입에 관한 상세는 채동현, “국제거래와 법”, 청림출판, 2004, pp.37-111 참조.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게다가, 현재 지명이란 또한 그 지명된 은행에 의하여 인수된 환어음 또는 그 지명된 은행에 의하여 초래된 연지급 확약을 선지급 또는 매입하기 위한 수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중동 및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은행업자들이 안도의 한 숨을 쉴 것이며, 이제는 그들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을 선지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동시에 수출업자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⁴¹⁾

요컨대 UCP 600은 연지급 신용장이 인수신용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⁴²⁾ 즉, 동 규칙 제7조 c항에서 “…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혹은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⁴³⁾라고 규정하여 연지급 확약의 할인(선지급 또는 매입)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국내위원회는 37개국중 27개국이 연지급 확약의 할인을 허용하는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다.⁴⁴⁾

한편 Laurence 씨는 동 조항이 수입업자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연지급 신용장은 지급이 단지 만료일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그 사이에 사기에 대하여 조사할 기회를 주며, 만일 필요하다면 만료일에 지급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추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 사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주는 유일한 유형의 신용장이었다. 그렇지만 UCP 600은 그 보호를 제거할 것이며, 따라서 은행업자들은 법적인 배상의 두려움 없이 이러한 돈벌이 되는 관행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⁴⁵⁾

3. 불명확한 용어의 제거

UCP 600의 두드러진 업적 중 하나는 불명확한 용어들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41) Pradeep Taneja, op. cit., p.4.

42) 飯田勝人, 전계논문, p.5.

43) UCP 600 Article 7. “…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

44) ICC, supra note 37.

45) Laurence A.J. Bacon, op. cit., pp.7-8.

UCP 600 초안 작성자들은 UCP 500에서 사용된 지나치게 전문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포함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reasonable care”, “reasonable time” 및 “on its face”(한 조항에서 제외하고)와 같은 표현의 제거이다. 이것은 “reasonable” 또는 “on its face”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증명 또는 반론하기 위하여 무역업계 및 은행계가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싼 보수를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 건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⁶⁾

문면상(On its Face)이라는 용어를 UCP 600의 본문에서 제거하는 안건에 관하여 12개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초안작성그룹은 제14조 서류의 심사 표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의 한 조항⁴⁷⁾을 제외하고는⁴⁸⁾ 모든 부분에서 문면상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⁴⁹⁾ 이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문면상이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면상이라는 의미가 서류 뒷면에 반대되는 서류의 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⁵⁰⁾ 또한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 가에 관하여 그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은 제7은행영업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표현을 제거하고 제5은행영업일이란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46) Pradeep Taneja, op. cit., p.4.

47) UCP 600 제14조 a항 :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48) 이는 서류 심사자가 무슨 정보, 페이지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가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표현을 동 조항에 남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9)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행해지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사한 문구의 포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한 조항에서는 동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ICC, *supra* note 37).

50) R., Kreitman, “UCP 600: The end in sight?”, <http://www.mantissa.co.uk/support/nextucp2.htm>.

4. 기타

UCP 600 제14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정보에서의 불일치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일치의 감소를 이끌 것이다.

UCP 600 제14조 g항에서 “제시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는 무시될 것이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과거의 UCP 500과 비교해 보면, 만일 수익자들이 UCP 500에 따라 개설은행에게 그러한 서류들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서류 심사자들이 일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 때문에 달리 소비되었을 시간과 노력을 많은 서류 심사자들로부터 덜 어줄 것이다.

UCP 600 제14조 j항에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조건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이에 입각한 많은 신용장 분쟁을 근절할 것이다.⁵¹⁾

제 5 장 UCP 600의 문제점

1. 보험 관행과의 모순

현행의 UCP 500 제34조 (e)항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보험 서류상에 담보가 늦어도 물품의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수탁일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되지 않는 한 은행은 그 운송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수탁일보다 늦은 일자로 되어 있는 보험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

51) Pradeep Taneja, op. cit., p.4.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은 보험업계의 관행과 불일치하다고 여겨진다. 즉, 보험서류의 발행일이 보험이 사실상 언제 유효한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⁵²⁾

불행하게도 이러한 업계의 관행과 모순되는 내용이 UCP 600 제28조 e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⁵³⁾ 동 규정에서는 “만일 보험서류에서 부보가 최소한 선적일자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서류의 유효일은 그것의 “발행일”과는 관계가 전혀 없으며,⁵⁴⁾ 오히려 사건의 발생 즉, 협회적하약관 (A), (B), (C)의 기간 조항(Duration Clause) 부문에서의 운송 조항(Transit Clause) 8.1에서 분명히 규정되는 바와 같이 운송의 개시 시간(the time of commencement of transport)에 의존한다. 따라서 다른 서류들과 충분한 연관이 있다면, UCP 600 제28조는 보험서류의 발행일이 본선 선적일보다 더 늦게 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⁵⁵⁾

2. 은행업계 위주의 규칙

UCP 600은 주로 은행의 이익을 반영하여 은행업계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UCP 600을 만든 초안작성그룹 중 Laurence Kooy(BNP Paribas의 법률 고문)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은행업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운송업, 보험업, 무역업계보다는 은행업계 위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UCP 600의 초안작성그룹에서 수출상 또는 수입상 대표는 전혀 없다.⁵⁶⁾ 또한 수출상과 수입상측은 ICC 은행위원회 회원들의 대략 1%에 지나지 않는다.

52) 이것은 다음 논문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K. Christensen : The transit clause”, *LC Monitor*, Vol.7, Issue 5, 2005. 9/10. “T.O. Lee : The effective date of a cargo insurance policy”, *LC Monitor*, Vol.7, Issue 5, 2005. 9/10.

53) Kim Christensen, “UCP revision – the last six mile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3.

54) 이에 대해 일부 은행업자들은 보험서류의 유효일이 발행일과 관련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55) T.O. Lee, “A call for consistency with transport convention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6.

56) 이러한 현상은 UCP 500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비록 그들의 견해가 공개된 포럼에서 표현되어 왔을 지라도, 그들의 숫자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장은 종종 무효로 돌아가곤 하였다.⁵⁷⁾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의 사용이 날로 감소 추세에 있다. 물론 대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신용도의 증가, 본·지사 거래의 증가 등 기업 환경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일치 수수료의 징수, 복잡한 서류처리 절차 등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은행업계 위주의 신용장통일규칙과 이의 운용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중에 UCP 600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은행업계를 비롯하여 운송업계, 보험업계, 무역업계, 법조계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균형 잡힌 규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제 6 장 결 론

UCP 600은 3년 6개월에 걸친 국제상업회의소 초안작성그룹, 자문그룹, 각 국내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운송업, 보험업, 은행업에서의 발전을 반영하고, 소수 항목들의 변경을 목적으로 개정 작업이 출발하였지만 애초 계획보다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내용상의 많은 변경도 포함하였다.

구조상의 변화로는 UCP 500에서 신용장의 개설/변경 지시(제5조), 취소가능한(제6조), 취소(제8조),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제12조), 다른 서류들(제38조)을 다루었던 5개 조항이 폐지되었다. 한편, 정의(제2조), 해석(제3조),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제9조), 지정(제12조), 일치하는 제시(제15조), 원본서류 및 사본(제17조)을 다루는 6개 조항이 UCP 600에 새로 신설되었다. 그 밖에 UCP 500의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조, 제46조, 제47조의 내용이 UCP 600의 원문 속에 포함 또는 통합됨으로써 UCP 500의 49개 조항에서 UCP 600의 39개 조항으로 10개 조항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57) Laurence A.J. Bacon, op. cit., p.6.

내용상의 변화로는 UCP 500에서의 서류심사기간인 “서류 수령 의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에서 “서류 수령 의일로부터 제5은행영업일”로 서류심사기간을 단축한 점, 과거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 허용에 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을 명시적으로 동 신용장의 할인을 허용한 점, “상당한 주의”, “상당한 기간”, “문면상”과 같은 애매하고 불명료한 표현들을 제거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UCP 600이 보험서류의 발행일에 관하여 보험 관행과의 모순이 발견되는 점과 지나치게 은행업계 위주로 개정되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UCP 600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조계를 제외한 채 지나치게 은행업자 위주로 규칙을 제정한 나머지 향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인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과거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들은 법조계에서 정립된 표현이었지만 UCP 600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P 600의 최종 초안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2007년 7월 1일의 공식적인 실시일을 앞두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UCP 600의 내용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UCP 600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및 그 대비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계, 업계 및 법조계의 긴밀한 산학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參 考 文 獻

-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김종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7.
- 채동현, “국제거래와 법”, 청림출판, 2004.
- 飯田勝人, “動き出した信用状統一規則の改訂作業と改訂の方向性”, “金融法務事情”, No.1693, 2003. 12. 15.
- 新堀聰, “信用状と詐欺”, “貿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第54券 第8號, 2006. 8.

- Anonymous, “Banking commission approves revi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http://www.iccwbo.org/iccjcde/index/html>, Paris, 2006. 10. 25.
- _____, “Revised ICC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make progress”, <http://www.iccwbo.org/icceide/index.html>, 2005. 10. 26.
- _____, “UCP update : Working on the final draft”,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 Bacon, L.A.J., “Who speaks for the exporter?”,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 Christensen, K., “UCP revision - the last six mile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 _____, “The transit clause”, LC Monitor, Vol.7, Issue 5, 2005. 9/10.
- Fung, K.T., Leading Court Cases on Letters of Credit, ICC Publication No.658, 2004.
-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Banking Commission Decisions, 1999. 7. 2.

ICC, The final draft of UCP 600, 2006. 11.

ICC, UCP 600 Conference, Paris, 2006. 10. 26.

Kreitman, R., "UCP 600: The end in sight?", <http://www.mantissa.co.uk/support/nextucp2.htm>.

Lee, T.O., "A call for consistency with transport convention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_____, "The effective date of a cargo insurance policy", LC Monitor, Vol.7, Issue 5, 2005. 9/10.

Mann, R.J., "Ronald J. Mann wonders why, in view of high discrepancy rates, business continues to use letters of credit",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7, No.1, Winter 2001.